

1. 개정이유

법률 개정('25.11.11.공포)으로 기존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 그 기능이 확장('26.5.12.시행)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 생략,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절차의 명확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효기간 완화 등 법령 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과 서식 작성 항목의 구체화를 통해 민원편의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력증 발급 및 수리업등 등록신청 제출서류 정비(안 제5조의4, 제6조, 제8조,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6, 제7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3호의7 서식)
- 나. 국가유산수리시스템 명칭 변경 및 구축·운영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별표 3)
- 다. 현장배치 확인표 등 서식 작성 항목 구체화(안 별지 제6호의4, 제6호의7, 제23호, 제23호의5 서식)
- 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 범위 현행화(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00. ~ 2026.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를 “발급받으려”로,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5조의4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한다. (단, 제4호는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업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보고서 및 확인서”로, “작성된”을 “작성되거나 발급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하며,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9조 단서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0조의5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들의 자격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에 관한 정보 관리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중 “서천대목장”을 “대목장”으로 하고, 같은 란 가목의 대목장(전라북도 무형유산)란 다음에 대목장(전라남도 무형유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목장(전라남도 무형유산)

별표 3 제6호의 수수료란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 및 별지 제6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뒤쪽 중 “경력사항”을 “현장경력”으로 하고, “기간”을 “기간(인정일수)”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앞쪽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앞쪽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앞쪽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앞쪽 라목을 다목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사진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생년월일					
	주소					
	①자격명 (자격종목)					
	②자격번호					
	③자격취득일 (합격연월일)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④학력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⑤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업종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번호		
		~				
		~				
		~				
		~				
⑥교육	교육기간	교육구분	교육종류	이수시간	교육기관	교육명
	~					
	~					
⑦상훈 · 제재	발생 연월일	종류	상훈 · 제재 기관		근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으로 하고, 같은 앞쪽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앞쪽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앞쪽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앞쪽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앞쪽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앞쪽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앞쪽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5서식 및 별지 제23호의7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을 인정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사진 1장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방법

- ①, ② 및 ③란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에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 ④란은 최종학력(대학 이상 모두)을 적습니다.
- ⑥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⑦란은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제사항을 적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인적사항	①성명	(서명)	②생년월일	
	③자격명 (자격종목)		④자격번호	
소속회사	⑤회사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영업소재지	
	⑨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종류		⑩국가유산수리업등 의 등록번호	
	⑪근무기간		⑫전화번호	
현장경력1	⑬참여사업명		⑭발주자	
	⑮사업비(천원)		⑯사업구분	
	⑰사업기간		⑱참여기간	
	⑲담당업무		㉔국가유산명 및 유형	
	㉔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현장경력2	⑬참여사업명		⑭발주자	
	⑮사업비(천원)		⑯사업구분	
	⑰사업기간		⑱참여기간	
	⑲담당업무		㉔국가유산명 및 유형	
	㉔사업개요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자격 및 근무처 등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비고(이 남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⑥란의 근무기간은 소속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적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 ⑬란의 참여사업명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실제 참여한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 ⑭란의 발주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기관명·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⑮란의 사업비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참여한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의 완료금액(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적고 공동도급 계약방법 중 분담이행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되, 일부 공동에만 참여한 경우 해당 공종의 금액 및 지분율로 산정합니다. 하도급의 경우는 직접 시공한 하도급 국가유산수리 분만 적습니다.
- ⑯란의 사업구분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 참여사업별 특성분류표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⑰란의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 ⑱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에 실제 참여한 기간(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합니다)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가.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 현장에 상주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경력이 종료되었으면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 ⑲란의 담당업무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 참여사업 담당업무 분류표에서 해당하는 업무를 적습니다.
- ⑳란의 사업개요는 수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며, 건조물 등을 신축, 복원 및 보수한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 주요내용 등을 적습니다.
- 현장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현장경력2 다음에 이어서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를 적습니다.
- 경력확인서 발급 시 일련번호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5. 3. 20.>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경력증 발급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① 학력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② 교육	교육기간	교육구분	교육종류	이수시간	교육기관	교육명
		~					
		~					
		~					
	③ 상훈 · 제재	발생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④ 추가 경력	회사명	근무기간		업종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번호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자격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유의사항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서 작성방법

- ①란은 기존 신고 외 추가되거나 변경된 학력사항을 적습니다.
- ②란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③란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 ④란은 기존 신고 외 국가유산수리, 감리 또는 실측설계 업무에 근무하고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 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구분	변경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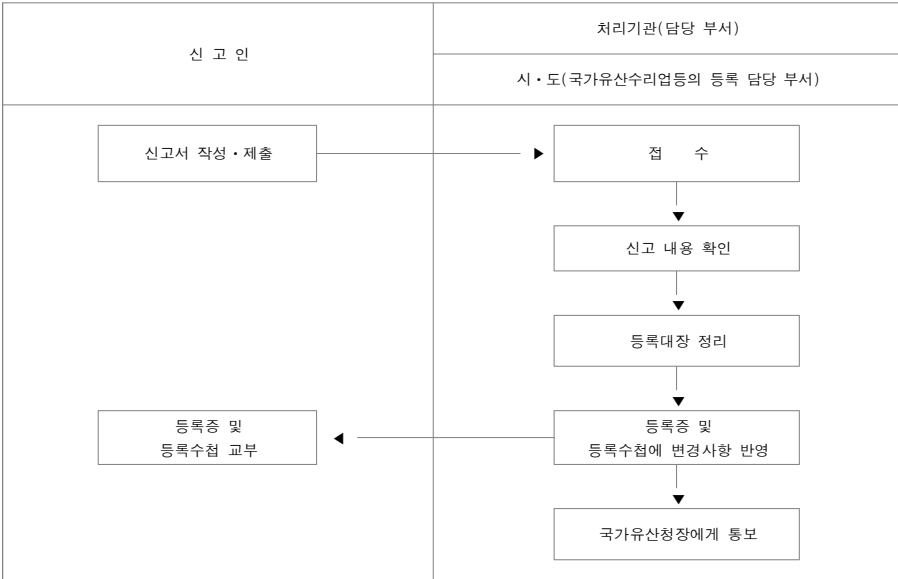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예정금액	담당업무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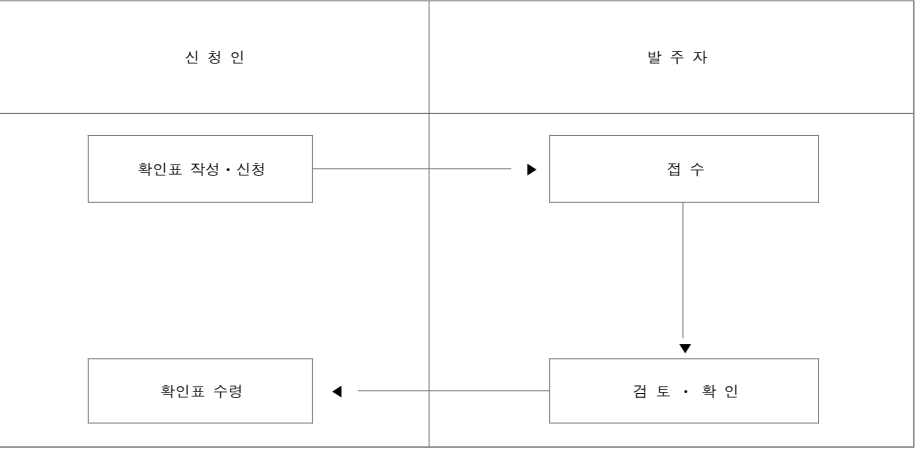
유의사항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국가유산	명 칭	
	종 류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	완료예정일
	계약금액	변경금액
	그 밖의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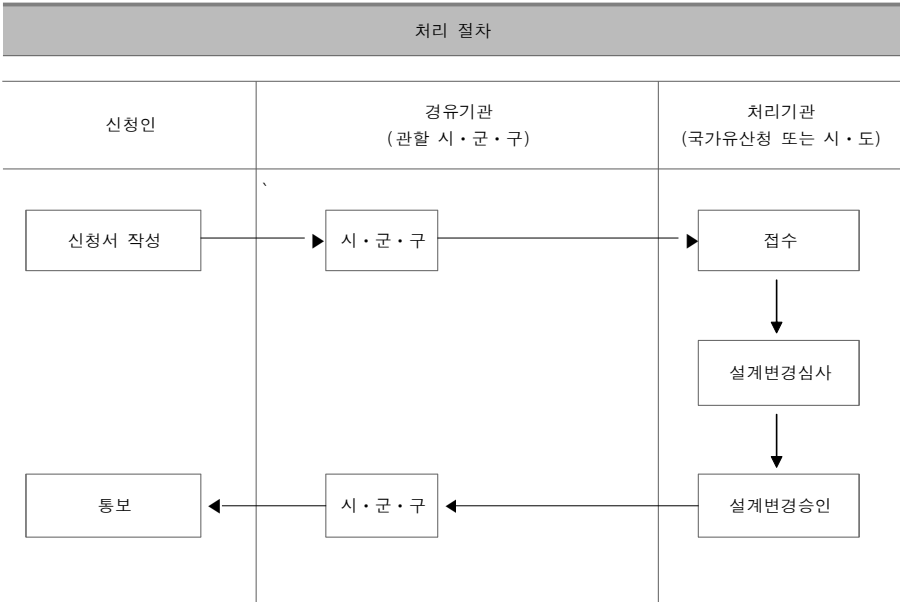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수수료 없음
------	-------------------------------------	--------

(뒤쪽)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 (천원)	감리의 구분	발주자명	확인 연월일	확인 (발주자)
1							
2							
3							
4							
5							
6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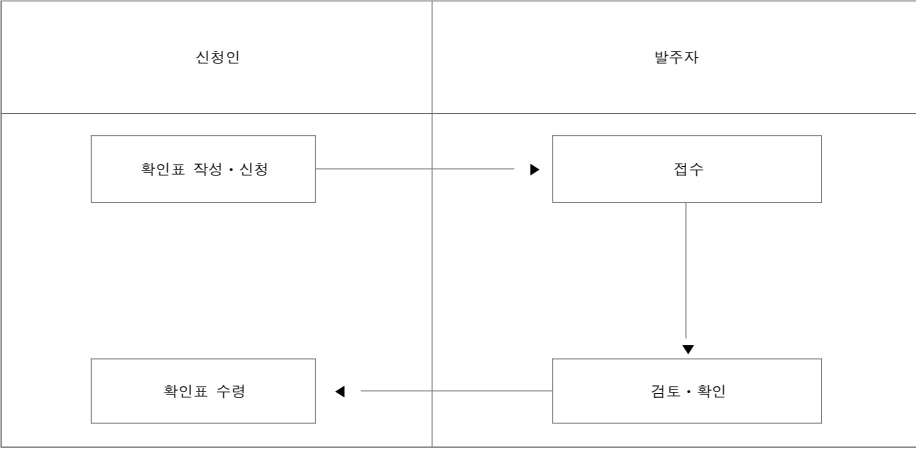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150g/㎡)]

유의사항

1. 신청인(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은 도급받은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예정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3. 감리의 구분은 책임감리, 일반감리(상주국가유산감리원), 일반감리(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중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생략)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들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들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첨부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발급 받으러

다음

호의 서류

--. 다만,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라 한
 다)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
 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
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갈
음할 수 있다)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u>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 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 업만 해당하며,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 야 한다)</u>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 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 류 가.·나. (생 략) 다. <u>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 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의 자격증</u>	2. ----- ----- -----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3. (생 략) ② ~ ⑤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 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 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u>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 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 신고서 및 첨부서류) ----- ----- ----- ----- ----- ----- ----- ----- <u>국가유산수리시스템</u> ----- ----- -----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 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 -----.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①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또는 <u>국가유산수리종 합정보시스템</u> 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국가유산수리시스 템</u> ----- ---.
제10조의5(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 (법 제56조 및 영 제30조에 따 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 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 리할 수 있다.	<삭 제>
1.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u>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u>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u>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u>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1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합병 신고에 관한 업무
9.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업무
10.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의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의

- 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소·정지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영업정지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처분
-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 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 ----- ----- --.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 치 확인) ① (생 략)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 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 을 받으려는 자는 <u>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u> 을 통하여 받아 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가유 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 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② ----- <u>국가유산수리 시스템</u> ----- -----. ----- ----- ----- ----- ----- --.
<신 설>	제20조의2(<u>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① 국가유산청장 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 축 및 제공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

	<u>격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 영에 관한 정보 관리</u>
	3.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자 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u>
	4. <u>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 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u>
	② <u>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 리시스템의 자료 및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u>
	③ <u>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